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5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김미애·강대식·강명구

강민국・강선영・강승규

고동진・곽규택・구자근

권성동 • 권영세 • 권영진

김 건 · 김기웅 · 김기현

김대식 · 김도읍 · 김민전

김상욱 • 김상훈 • 김석기

김선교 · 김성원 · 김소희

김승수 · 김예지 · 김용태

김위상 · 김은혜 · 김장겸

김재섭 · 김정재 · 김종양

김태호 · 김형동 · 김희정

나경원 • 박대출 • 박덕흠

박상웅 • 박성민 • 박성훈

박수민 • 박수영 • 박정하

박정훈 • 박준태 • 박충권

박형수 • 배준영 • 배현진

백종헌 · 서명옥 · 서범수

서일준 · 서지영 · 서천호

성일종 · 송석준 · 송언석

신동욱 • 신성범 • 안상훈

안철수 · 엄태영 · 우재준

유상범·유영하·유용원 윤상현·윤영석·윤재옥 윤한홍·이달희·이만희 이상휘·이성권·이종박 이인선·이종배·이종욱 이철규·이현승·인요한 임이자·임종득·장동혁 정동만·정성국·정연욱 정점식·정희용·조경태 조배숙·조승환·조은희 조정훈·조지연·취보윤 최수진·최은석·최형두 의원(108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」은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적·안정적 지원과 지역의료의 육성·지원을 위 해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음.

이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「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」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별표 1 제24호 신설, 별표 2 제72호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9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4. 「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」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2. 「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」

#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